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안내

2020. 3.



보건복지부

본 안내서는 '20. 3. 1.부터 적용함

목 차

I. 개요	1
1. 목적	1
2. 관련법령	2
3. 주요내용	2
4. 업무 처리절차 개요	5
II. 생산시설 지정	7
1. 지정계획 공고	8
2. 사전교육	9
3. 신청접수	10
4. 서류심사	14
5. 현장심사	15
6. 결과통보	17
7. 지정공고 및 지정서 교부	17
8. 지정서 재발급	18
9. 생산시설 재지정	21
III. 생산시설 행정처분	24
1. 행정처분 요건	24
2. 행정처분 적용기준 등	27
3. 행정처분 절차	31
IV. 지도·감독	35
1. 생산시설 점검	35
2. 생산시설 현황 점검	42
3. 벌칙 등	43
V.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사이버교육	47
<붙임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정도>	48
<붙임2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사이버교육 사용 매뉴얼>	55
<붙임3 : 각종 서식>	68

서식 목차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신청 접수대장	69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서류·현장) 관리대장	69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리대장	70
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교부대장	70
5.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후점검 관리대장	71
6.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행정처분 관리대장	71
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재지정 신청서	72
8. 생산시설 수익금의 법인 목적사업 사용계획서	73
9.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공정도	74
10.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직접생산 장비 목록	75
1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직접생산 원부자재 목록	76
1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유급근로자 명부	77
1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결과통보서(서류·현장)	78
1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79
15.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80
16. 현장조사서	81
17. 사실확인서	82
18. 생산설비 보유 확인서	83
19. 추가자료 제출 요구서	84
20.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후점검 결과통보서	85
2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86
22. 의견제출서	88
23.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89
24. 청문출석 포기 확인서	90
25. 청문조서	91
26. 청문주재자 의견서	92
2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기준 자가 체크리스트	93
28.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직접생산 보고서(월별)	106

I. 개요

1 목 적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의 지정심사, 사후점검 및 행정처분(개선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지정취소 등) 등 업무 절차 등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업무 처리하고자 함

* '생산시설'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수, 고용비율, 직접생산 등 일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정의)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그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고용 및 근로를 통한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그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또는 재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제3호 '재활훈련시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을 말함

2 관련 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16호)」
-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보건복지부예규 제88호)」

3 주요 내용

① 생산시설 지정 (「특별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6조·제17조 등)

- 생산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함
-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후 유효기간(지정일로부터 3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시 지정받을 수 있음

② 생산시설 행정처분 (「특별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음. 단, 다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가.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나.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때 또는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 라.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생산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 마. 「특별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
 - 바.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생산시설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됨 (법률개정 '16.2.3 · 시행 '16.8.4)

< 실질적 동일성 기준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 2) >

제18조의2(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시설의 대표자와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대표자가 같을 것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이 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하였을 것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이 취소된 자와 합병되었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로부터 분할되었을 것
4. 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같을 것

③ 지도·감독 (「특별법」 제18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생산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기관에 출입하여 조사·질문을 하게 할 수 있음
- 생산시설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하여서는 아니 됨

-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 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현장조사서 등)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4 청문 (「특별법」 제21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영업정지, 지정 취소(처분)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업무수행기관의 지정 취소(처분)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함

5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특별법」 제21조의 2)

-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수행기관의 임직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봄

6 벌칙 (「특별법」 제22조)

- 「특별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특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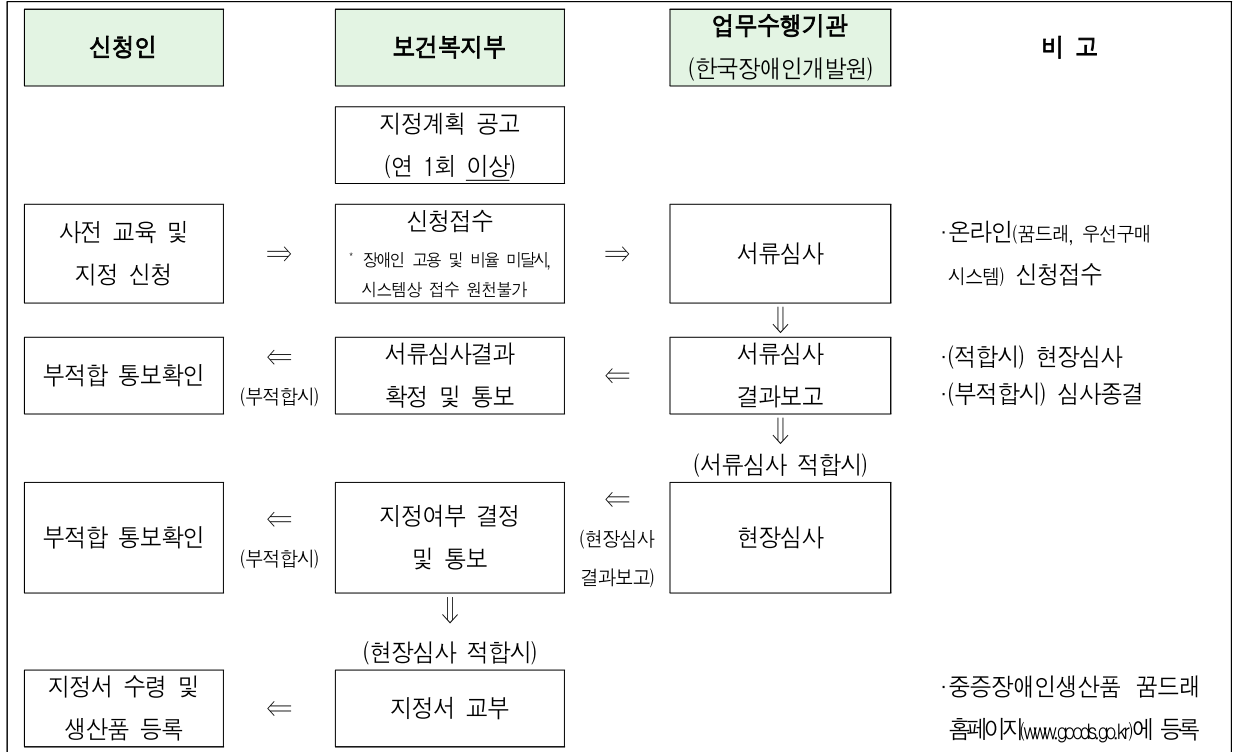
7 과태료 (「특별법」 제23조)

- 「특별법」 제1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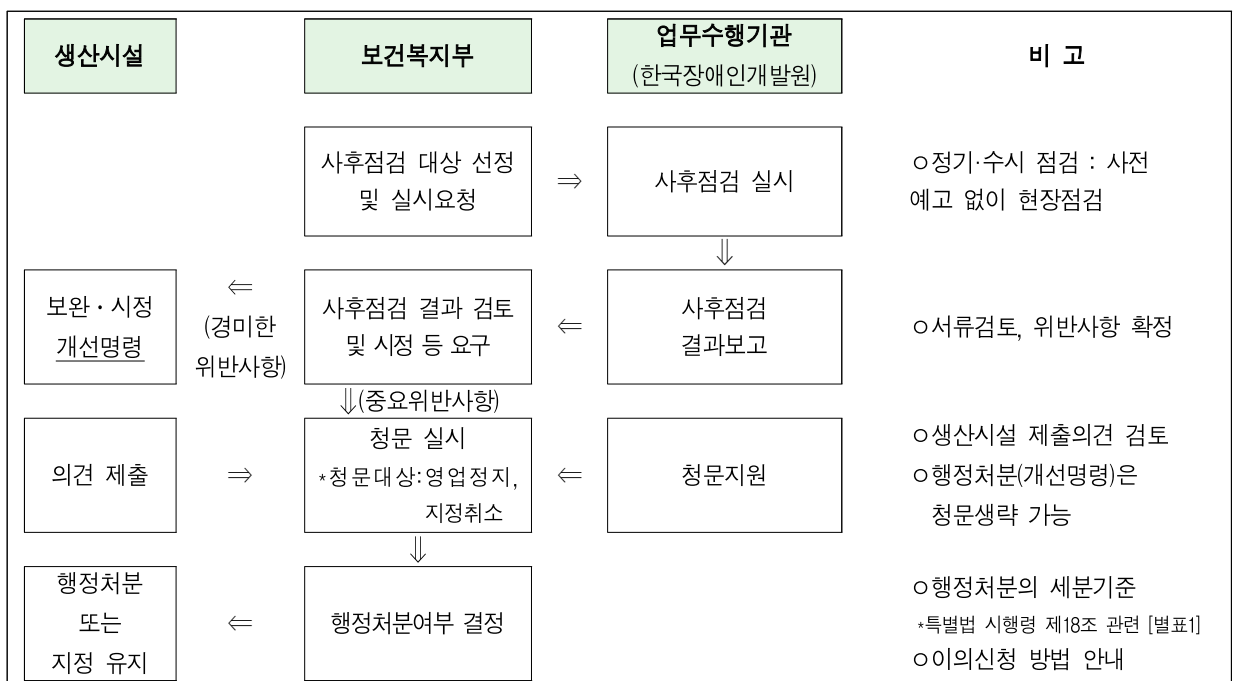
4 업무 처리절차 개요

○ 생산시설 지정 (재지정)



※ 재지정의 경우 조사항목은 지정심사와 동일하나, 필요에 따라 일부 심사항목을 생략 가능(21p 9. 생산시설 재지정 참조)

○ 생산시설 사후점검



<참고 :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업무>

□ 업무수행기관의 업무 (「특별법」 제12조)

- | | |
|----------------------------------------------|----------------------------------|
| 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지원, | 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확대를 위한 조사·연구 |
| 3. 제7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계약의 대행 | |
| 4.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 5.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기술개발의 지원 |
| 6.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판매촉진 지원, | 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연수 |
| 8.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 |
| 9.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지원, | 10.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포장 및 용기의 디자인 개발 지원 |
| 1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 | 1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
| 1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사업 | |

□ 업무수행기관별 업무 (「업무수행기관 업무규정」 제3조)

한국장애인개발원 (‘09.6. 지정)	한국직업재활시설협회 (‘12.9. 지정)
<p><운영규정 제3조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지원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원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구매실적·구매계획의 취합·정리 지원 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등 법 제12조 제6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지원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사무 지원 6.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대상 교육에 대한 지원 7.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의 실시에 대한 지원 8.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의 지원 9. 법 제1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10.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 실시에 대한 지원 1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리시스템의 구축·고도화·운영 지원 1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 13.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기술개발의 지원 1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연수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15.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획득 및 포장·용기 디자인 개발을 위한 사업의 지원 16. 기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p>< 운영규정 제3조제2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등 법 제12조 제6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지원 6.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대상 교육에 대한 지원 9. 법 제1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1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 13.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기술개발의 지원 1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연수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16. 기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II. 생산시설 지정

**장애등급 제도 폐지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시 '중증장애인' 규정 적용지침**

- ◆ **적용대상** : '중증장애인' 정의(현행 법 제2조제1항)
- ◆ **적용범위** : 생산시설 지정·재지정 신청 시 '중증장애인' 인원 및 비율 산정
- ◆ **적용기간** : 2019. 7. 1. ~ 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전일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김순례 의원 발의, `19. 3. 8.)
- ◆ **적용 지침**

현행 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1항 [시행 2018. 12. 13.]	적용 지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장애인의 장애정도 [시행 2019. 7. 1.]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호흡기장애인·언어장애인 2.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뇌병변장애인·심장장애인 3.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청각장애인·신장장애인·뇌전증장애인·간장애인·안면장애인·장루·요루장애인 4.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3급의 지체장애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2가지 이상 가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1호 내지 15호 장애인 중 각 목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16호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보는 중복 장애 합산 판정에 해당하는 사람 ☞ 상세내용은 <붙임1(48p)> 참조

◆ 기존 근로자에 대한 적용례

- 위 적용지침에도 불구하고, 이미 생산시설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 중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호흡기장애인과 언어장애인, 제5호에 따른 중복장애인은 생산시설 재직기간 중 (퇴사후 재입사 제외)에는 ‘중증장애인’ 인원으로 산정함

◆ 중증장애인 해당여부 판정 방법

- (이미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 소지하고 있는 장애인등록증 상 1~3급으로 표기된 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간주*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이후 새롭게 장애인등록을 한 장애인) 새로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되는 장애인

◆ 특기사항

- 동 지침에서 정한 ‘중증장애인’ 규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기준에 대한 사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기타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여타의 중증장애인 규정은 해당 법령에 따라 그 범위와 적용례가 다를 수 있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장애인의 장애정도 : <붙임1(48p)> 참조

1 지정계획 공고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생산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방법

- 연 1회 이상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업무수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및 꿈드래 홈페이지(www.goods.go.kr)에 게재

② 공고내용

- 사전교육 관련 :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 지정심사 관련 : 심사기관, 심사기준 및 방법, 지정신청서류 등
- 기타 : 지정 시 유효기간, 문의처 등

③ 신청방법 및 기간 등 : 공고문에 게재

2 사전 교육 (한국장애인개발원)

① 교육대상 :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 제한 없음(누구나 참석가능)

② 교육방법 : 오프라인 집합교육

③ 교육운영 : 한국장애인개발원*

* 업무수행기관은 2개소(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직업재활시설협회)이나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 중

④ 교육횟수 및 일자 등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

* 연초 보건복지부 공고계획에 따르며, 교육 횟수 및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⑤ 교육내용

- 생산시설 지정계획 및 절차, 지정 신청방법, 지정 심사기준 등

⑥ 신청방법 : 꿈드래 홈페이지(www.goods.go.kr)를 통한 신청서 접수

3 신청 접수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설립허가증(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필증

2. 근로자 명부 1부 3. 근로자 임금대장 1부 4.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① 신청대상 :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 둘 이상의 품목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요건을 갖추어 신청(품목별로 적합여부 판단)

* 기존 생산시설이 품목을 추가지정 신청할 경우, 기 지정 품목과 신규 지정신청 품목간의 연계성을 지정심사 시 고려할 수 있음

②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공고절차에 따름)

○ 신규 신청시설의 경우

- 꿈드래 홈페이지(www.goods.go.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파일제출

○ 기지정 시설*의 「품목 추가」의 경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www.goods.go.kr/koddi.do) '품목추가신청'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파일제출

* 기지정 시설이란, 이미 생산시설 지정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함

☞ 추가서류 제출 시 서류누락 및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

③ 신청접수

○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설은 꿈드래 홈페이지(신규 신청시설) 또는 우선구매관리시스템(기지정 시설)을 통해 접수

- 시스템(꿈드래 홈페이지·우선구매관리시스템)상 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고용 및 비율 미 충족시 신청 불가
- 행정처분(영업정지, 지정취소), 민·형법상의 조사, 행정심판·소송 등이 진행 중인 시설은 해당내용에 대한 상황이 종료된 이후 신청 가능

* 전 차수 지정심사(재지정, 사후점검 등) 결과, 심사보류 처분된 시설은 신청접수 및 심사진행이 제한될 수 있음

- 서류제출 시 필수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신청불가하며, 신청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서류임에도 제출 누락 또는 부적절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 반려할 수 있음

* 시스템 신청 중 오류 발생시, 한국장애인개발원 담당자에게 반드시 즉시 유선문의

-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④ 제출기간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한 기간

⑤ 제출서류 : 법정서류, 지정심사 체크리스트(엑셀파일 양식) 및 관련 근거서류

○ 지정신청서 ☞ [서식 7(72p)]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기준 자가 체크리스트 ☞ [서식 27(93p)]

○ (단체의 경우) 생산시설 수익금의 법인 목적사업 사용계획서 ☞ [서식 8(73p)]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공정도 ☞ [서식 9(74p)]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직접생산 장비 목록 ☞ [서식 10(75p)]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직접생산 원부자재 목록 ☞ [서식 11(76p)]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유급근로자 명부 ☞ [서식 12(77p)]

○ 기타, 신청자격, 근로자 고용 및 직접생산 등 확인을 위한 기타 근거 자료

* 신청시설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음

< 제출서류 목록(예시) >

구분	제출서류	비고
적격성 관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단체 설립허가증	◦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 직업재활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정신 재활시설 설치신고필증 1부	◦ 재활훈련시설(직업재활시설)
	◦ 근로자 명부	
	◦ 근로자 임금대장	
	◦ 정관 또는 규약	
	◦ 지정신청서 및 지정신청양식(생산공정도, 직접생산 장비 목록, 원부자재 목록) * 꿈드래 홈페이지(신청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www.goods.go.kr)	

구분	제출서류	비고
적격성 관련	◦ 법인등기부등본	◦ 장애인복지단체
	◦ 생산시설 수익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 사용 계획서	◦ 장애인복지단체
근로자 관련	◦ 지정심사 체크리스트	
	◦ 4대 사회보험가입자 명부	
	◦ 전체근로자 근로계약서	
	◦ 장애인복지카드(앞, 뒷면) 또는 장애인증명서	
	◦ 전체근로자 명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예산신청 및 승인 공문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지방자치단체 임면보고 승인 공문 (지자체→생산시설)	◦ 재활훈련시설(직업재활시설)
직접생산 관련	◦ 품목별 전문기술인력 이력서(필수), 자격증(해당시)	
	◦ (해당시)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서	
	◦ 사업자등록증명	
	◦ (해당시) 공장등록증명서	
	◦ 일반건축물대장	
	◦ (해당시) 생산공장 임대차계약서	
	◦ (해당시) 생산공장 임차보증금 이체내역 및 통장 사본	
	◦ (해당시) 생산공장 월 임차료 이체내역 및 통장 사본	
	◦ (해당시) 생산공장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 (해당시) 위.수탁협약서	◦ 직업재활시설 ◦ 재활훈련시설(직업재활시설)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또는 고정자산관리 대장 또는 생산설비 구입 증빙 서류	
	◦ (해당시) 생산·검사설비 임대차계약서	
	◦ (해당시) 생산·검사설비 임차보증금 이체내역 및 통장 표지	
	◦ (해당시) 생산·검사설비 월 임차료 이체내역 및 통장 표지	
	◦ (해당시) 기증 및 공증서	
	◦ 신청품목을 생산·판매하기 위한 필수 인허가 서류 예시) 조명기구: KC인증서류, 검교정성적서 등 제과제빵, 김치: 영업신고증,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성적서 등 청소: 위생용역업신고증 CCTV: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 등 광고판: 옥외광고업등록증 인쇄물: 인쇄사신고필증 등	

⑥ 현황보고

- 업무수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은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신청시설 현황을 접수완료 후 보건복지부로 공문보고

☞ [서식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신청 접수대장 (69p)

4 서류 심사 (업무수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① 서류심사 기관 : 업무수행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② 서류심사

- 심사대상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신청시설
- 심사내용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 및 「지정 관련 심사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16호)」 등 충족여부 서류심사

③ 보완 요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신청시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필요시 유선 또는 공문으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생산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6항제1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4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서류심사 결과통보(보건복지부→신청시설)

- 서류심사 결과 '적합' 시설은 현장심사 실시 통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신청시설)
- 서류심사 결과 '부적합' 시설은 부적합 통보(복지부→신청시설)

5 현장심사 (업무수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1 사전공지

- 공지방법 : 공문발송 (심사일정, 현장심사 시 필요한 서류 목록 등 안내)

< 현장심사 시 필요한 서류 목록 >

구분	증빙서류	비고
근로자 관련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 현장심사 당일 발급분
	◦ (해당시)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서	◦ 지정신청일 이후 퇴사자 발생시
	◦ (해당시)근로계약서, 장애인복지카드(앞.뒷면) 또는 장애인증명서	◦ 지정신청일 이후 신규 입사자 발생시
	◦ (해당시)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안내	
	◦ 출퇴근기록부	◦ 현장심사일 기준 최근 1개월
	◦ 근무상황부	◦ 병가/휴가/출장 등 근무현황 확인서류 - 현장심사일 기준 최근 1개월
	◦ 급여대장	◦ 현장심사일 기준 최근 1개월
직접생산 관련	◦ 급여이체내역 및 통장 표지	◦ 통장 사본 - 생산시설 명의의 통장 - 예금주, 계좌번호 등 확인용
	◦ 전기요금고지서, 이체내역 및 통장 표지	◦ 통장 사본 - 생산시설 명의의 통장 - 예금주, 계좌번호 등 확인용
	◦ (해당시)월 임차료 이체내역 및 통장 표지	
	◦ (해당시) 제조.판매원 표시	
	◦ (필요시) 신청품목 관련 원부자재 매입 및 매출 자료 - 원부자재구입대장, 매출대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2 현장심사

- 심사대상 : 서류심사 검토결과 적합시설
- 심사내용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 및 「지정 관련 심사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16호)」 등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 심사
 - * 필요시, 현장에서 추가서류 요청(현장에서 즉시 제출 불가시, 별도 지정기한 내 제출가능)
 - ☞ [서식 19(84p)] 추가자료 제출요구서(현장용)
- 심사방법 : 현장방문(2인1조로 심사원 구성) * 필요시, 외부전문가 포함
 - 필요시 생산시설에 대해 관련 자료(영상촬영, 관계자 진술녹음 등 포함) 수집 및 관계자의 확인서(82p)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확인된 사실에 대한 설명 및 확인서 제출 요구 방법은 IV. 지도·감독(35p) 참조
- 심사진행

구분	진행 내용	소요시간(분)
심사시작	심사원 소개, 현장심사 진행절차 및 기준 등 안내	5
현장심사	현장준비 서류 검토 및 보고서 작성	90
	근로자 및 생산현장 확인	60
심사종결	특이사항 및 추후일정 안내	20

* 소요시간은 현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현장 심사 시 심사원 유의사항 >

- 생산시설 대표자 및 담당자 등에게 본인신분을 밝힐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며 심사자 소개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및 지정심사에 대한 사항을 생산시설 대표자 및 담당자 등에게 사전 설명하고, 심사 관련 서류 제출 및 설명을 요청
- 현장방문 시 말투, 용모, 복장 등을 단정히 할 것
- 현장심사의 경우 생산시설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생산 시설 외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 혹은 온라인 자료제출 요구 가능
- 근로자에 대한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를 확인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주소 및 연락처 등을 삭제 처리하여 수집할 것

3 결과보고

- 시설별 작성 보고서 및 현장 심사내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간 회의를 거쳐 보완된 현장심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최종 보고

6 결과통보 (보건복지부)

① 심사결과 확정

- 보건복지부는 업무수행기관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검토의견 등을 토대로 생산시설 지정 적합여부 최종 검토·확정
- 둘 이상의 품목에 대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을 신청한 경우로, 그중 일부 품목만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적합 해당 품목만 지정

② 결과통보 (보건복지부 → 신청시설, 유관기관)

- 지정신청 시설에 생산시설 지정여부 공문통보

☞ [서식 13(78p)]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결과 통보서(서류·현장)

- 생산시설 유관기관*에 지정사실 공문통보

* 업무수행기관, 직업재활시설 신고수리기관, 법인설립허가 주무관청, 관할 지자체 등

7 지정공고 및 지정서 교부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생산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제16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생산시설 지정 신청의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전까지
 2. 생산시설 재지정 신청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생산시설을 지정하거나 재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⑧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① 지정공고 (보건복지부)

- 공고대상: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접수한 신청시설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6호)」 을 준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설
- 공고시기 : 수시
- 공고방법 :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업무수행기관 홈페이지에 게재

② 지정서 교부 (보건복지부 → 생산시설)

- 교부방법 : 우편 발송
- 지정서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서식 14(79p)]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8 지정서 재발급 (보건복지부)

① 지정서 재발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품질인증서의 재발급)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품질인증서를 재 발급받을 수 있다.

1. 품질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품질인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품질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재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원본(품질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7조(생산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⑧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 재발급 사유

- 지정서의 기재사항(대표자, 명칭, 소재지, 지정품목, 지정유효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
-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등

○ 재발급 신청 :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변경된 사항(대표자, 명칭, 소재지)이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 '영업신고증' 등 관련 서류 간에 일치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 신청서 양식은 '꿈드래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 [서식 15(80p)]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원본 (분실한 경우 : 해당없음)
-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시설 유형	제출 서류	공통제출서류
직업재활시설	시설신고증	재발급 신청공문, 재발급 신청서, 지정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지정품목 관련 인허가서류(영업신고증, 검사성적서 등)
장애인복지단체	법인등기부등본	

- * 대표자 변경 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대표자만 작성)
- * 소재지 변경에 따른 재발급 신청인 경우 위 제출 서류 외에 다음 자료를 추가 제출(사업장 외부전경사진(정면, 측면), 사업장 내부사진(각 실별 사진), 설비사진, 작업과정 사진)

○ 재발급 처리기간: 7일

- * 단, 서류보완, 현장심사 등에 따라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② 소재지 변경 관련 업무처리

○ 생산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관련 공부 및 제출한 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지정서 선 재발급
-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의 현장실사를 통해 생산시설 적합 여부 검증

* 부적합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조치

○ 생산시설의 소재지를 추가하는 경우

- 소재지의 추가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처리함
- 지적도상 인접·연접한 주소는 하나의 장소로 보나, 그 외의 경우는 복수의 소재지로 봄
- 복수 소재지 사업장 운영은 기 지정받은 생산품목의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해 생산 공간(원부자재·완제품 적재, 복리후생시설 등 포함)을 추가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
- 단, 하나의 생산시설이 2개 이상의 분리된 사업장에서 각각 다른 지정 품목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별로 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인원(10명) 등을 포함한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소재지 추가를 인정함
- 소재지 추가를 증명하는 관련서류 제출

* 생산시설 소재지 분산에 따른 소재지별 근로자(장애인, 비장애인) 배치계획, 생산설비 및 공정 관리운영 계획 등 추가 제출

9 생산시설 재지정

1 재지정 심사

- 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생산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③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어 생산시설로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신청서를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 3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제 16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산시설 재지정 신청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 심사대상 : 지정 유효기간(3년) 만료예정인 재지정심사 신청시설

- 심사시기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한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에 따라 상이)

* 재지정 신청시설의 경우, 사전 예고 없는 불시 현장점검 진행

- 심사내용 :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정 심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16호) 준수여부
- 신청방법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리시스템(www.goods.go.kr/koddi.do) 로그인 후, '재지정심사 신청' ☞ 우편접수 불가
 - 재지정심사는 접수기간 내에 시설별 1회 신청가능
 -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및 심사서류 제출
- 신청기한 :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 심사방법 및 절차
 - 현장방문(2인 1조) * 필요시, 외부전문가 포함
 - 서류심사는 생략 가능 하며, 현장심사 시 서류 및 현장심사를 동시진행
 - 조사항목은 생산시설 지정심사와 동일하나 필요(아래 참조)에 따라 일부 심사항목을 생략할 수 있음
 - ① 반기별(또는 분기별) 장애인근로자 고용이력 현행화(온라인)를 통한 기준 확인 시
 -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16호)」 제2조제3항 단서조항(단, 재지정을 할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의 경우
 - ③ 기타 심사기준에 대한 중복조사가 인정 될 경우

② 재지정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

- (적합시) 지정서 발급
 - 유효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3년간 유효기간 재설정

○ (부적합시) 지정 유효기관 종료 통보

-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지정종료

- ☞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지정종료의 경우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지정취소'시 '1년간 재지정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재지정 심사과정에서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지정 유효기간을 일시연장 한 후, 동 위반 건에 대해 별도의 행정처분 절차(청문 등)를 진행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음 (지정취소시, 1년간 생산시설 지정신청 불가)

Ⅲ. 생산시설 행정처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1. 신청자의 적격성
2.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3. 장애인근로자 생산 공정 참여율
4.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 여부

2.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때 또는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4.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5.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

6.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행정처분 요건

① 행정처분 사유 (「특별법」 제10조)

- 생산시설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때 또는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당연 취소)
-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당연 취소)
-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 행정처분 사유별 주요내용

- 생산시설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법 제10조제1항1호)
 - (가-1) 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인원수 미달 : 장애인근로자 10명 미만(둘 이상의 품목의 경우 품목별 5명 미만)
 - (가-2)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및 중증장애인고용비율 미달 : 전체근로자 중 장애인비율 70% 미만,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 비율 60% 미만
 - * 단, 특례적용 품목의 경우 중증비율은 30% 이상이어야 하며, 특례 품목과 제조품목을 동시에 지정받을 경우 중증비율은 합산하여 60% 이상이어야 함
 - (가-3) 장애인근로자 생산공정 참여율 미달 : 장애인근로자 근로시간 기준으로 생산공정 참여율 50% 미만
 - ☞ 원칙적으로 '지정받은 품목'의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생산공정 및 서비스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근로시간을 적용함
 - (가-4)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미 이행 : 생산공장·설비·인력·공장·직접생산 여부 등 기준 부적합

<예시>

- 생산 공장 기준 미달
- 생산 설비의 구비 및 운영 기준 미달
- 전문기술인력 및 생산 인력 기준 미달
- 생산 공정별 직접생산 여부 확인 기준 미달
- 제조물품 등의 완제 여부 및 기타사항 기준 미달 등

○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제1항2호)

<예시>

- 제품 품질 이상으로 납품받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공식 문제제기 된 경우
- 고의적 또는 상시적인 납기지연 및 AS지연·거부 등으로 발주 공공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공식 문제제기 된 경우
 -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제외
- 생산 제품·서비스 강매 등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공식 민원제기 된 경우
- 과도한 단가부풀리기 등으로 정당한 가격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 받은 때 또는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법 제10조제1항3호)

<예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설치신고 시 거짓·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영업 또는 계약수주과정에서 뇌물·향응, 부당한 반대급부 제공 등이 확인된 경우
-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 복지단체와 무관한 제3자가 부당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법인 단체의 명의를 빌려 생산시설 지정 신청한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 등

○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법 제10조제1항4호)

☞ 이 경우에도 지정취소 시설에 대한 1년간 재지정 제한규정이 적용됨

○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법 제10조제1항5호)

<예시>

- 다른 회사가 생산시설 명의(또는 상표)로 우선구매 납품하도록 한 경우
- 생산시설 소속 임직원이 다른 회사가 생산한 물품을 생산시설 제품인 것처럼 영업하거나 우선구매로 납품한 경우
- 다른 유사·동종업 회사 소속 임직원이 생산시설 명의의 홍보물(명함 등 포함)을 제시하며 공공기관 대상으로 영업하도록 한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 등

○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법 제10조제1항1호)

③ 지정취소 시설에 대한 제재 (법 제10조제2항, 2016.8.4.시행)

- 지정이 취소된 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생산시설로 지정하지 않음

<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 >

- 생산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시설의 대표자와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대표자가 같을 것
 -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이 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하였을 것
 -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이 취소된 자와 합병되었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로부터 분할되었을 것
 - 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같을 것
- ☞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자발적으로 지정취소를 요청하여 취소된 경우(법 제10조 제1항4호)에도 동 제재조항 적용됨

2 행정처분 적용기준 등

① 행정처분 세부기준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함.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함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 기준이 같으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할 수 있음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2호의 개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줄일 수 있음. 다만, 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지정 취소하는 경우에는 줄일 수 없음

- 1)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
- 2) 지정 취소: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경감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1호	개선 명령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나.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2호	개선 명령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2)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때 또는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3호	지정 취소			
라.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5호	지정 취소			
마.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6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 참고 : 행정처분 범위 >

- ‘행정처분 세부기준’의 개별기준에 근거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개선명령, 영업정지 및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
 - (개선명령) 위반행위 유형 중 지정 요건 미달, 품질보장 의무 위반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생산시설 대상 개선명령 통보
 - (영업정지) ‘행정처분 세부기준’의 개별기준에 근거하여 위반행위 및 동일 위반행위 유형 반복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처분
 - (지정취소) 원칙적으로 위반 품목과 관계없이 생산시설 전체 지정취소 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위반정도(위반의 중대성, 고의성, 반복성, 복합성 등) 및 청문위원의 청문결과에 따라 심사기준 위반의 원인이 된 해당 품목(일부품목 취소)에 한해 지정취소될 수도 있음(이 경우에도 생산시설의 직접생산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

② 매출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 기간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로 정하는 기간(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은 제3호가목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당 과징금을 30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 매출액의 산정기준

- 가. 제3호가목1)의 위반행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위반행위 기간 동안 공공기관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납품한 금액. 다만, 위반행위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동안 공공기관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납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제3호가목2)의 위반행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공공기관과 체결한 중증장애인생산품 납품 계약 중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계약의 매출액 또는 계약액
- 다. 제3호가목3)의 위반행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동안 공공기관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납품한 금액

3. 과징금의 부과기준

가. 세부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 1개월당 과징금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
2)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나목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
3)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다목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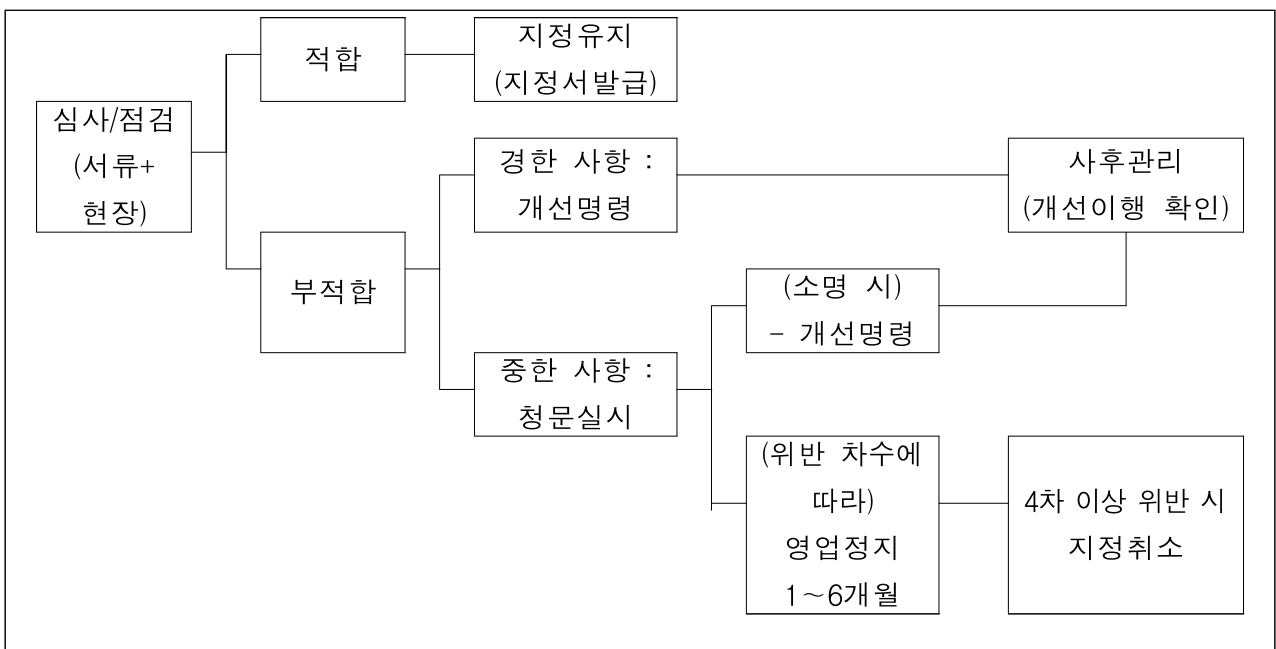
나. 감경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행정처분 절차

1 행정처분 진행절차



② 행정처분 절차 진행기준

- 행정처분(개선명령) 이후 기한 내 보완 또는 시정하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청문 등 실시 후 2차 행정처분 진행
- 중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청문을 실시하며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한 후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영업정지, 지정취소) 실시
 - 행정처분은 위반행위 정도 및 반복 횟수 등에 따라 가감경 적용될 수 있음(4차 이상 동일위반 행위 발생시 지정취소)

③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 접수 (보건복지부 ↔ 생산시설)

-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의견제출 기한 등 통지
 - * 근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7조 ☞ [\[서식 21\(86p\)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생산시설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서면(공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서식 22\(88p\)\] 의견제출서](#)

④ 청문 운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1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영업정지 및 지정 취소

- 청문실시 통지
 - 제출된 의견 등을 통해 부적합 사항이 소명 또는 해소되지 않은 경우 청문회부
 - *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중한 위반사항을 청문대상으로 하나, 사안에 따라 개선명령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청문 회부할 수 있음

- 처분당사자에게 청문실시 통지(청문 시작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서면통지)

- 출석을 원치 않을 경우, 청문출석포기 확인서 징구

* 근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1조

☞ [서식 23(89p)]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서식 24(90p)] 청문출석 포기 확인서

○ 청문위원 구성

- 외부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 5명 내외로 구성 (외부전문가 1/2이상 참여)

- 청문주재자는 가급적 외부전문가 중 선정

*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처분업무 직접처리자 등은 청문주재자 제척·기피·회피

○ 청문실시

- 청문주재자의 주재에 따라 증거조사 및 질문, 관계자 진술 청취 등

-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작성

* 의견채택은 과반수 동의를 얻되, 상반되는 의견이 동수인 경우 청문주재자의 의견에 따름

- 청문종료 후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보건복지부 제출

☞ [서식 25(91p)] 청문조서

☞ [서식 26(92p)] 청문주재자 의견서

<청문조서 등 작성 시 포함내용(행정절차법 제34조, 제34조의2)>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1. 제목	1. 청문의 제목
2. 청문 주재자의 소속, 성명 등 인적사항	2. 처분의 내용, 주요 사실 또는 증거
3. 당사자 등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 여부	3. 종합의견
4. 청문의 일시 및 장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당사자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6. 청문의 공개 여부 및 공개하거나 제30조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이유	
7.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행정처분의 확정 및 통지 등 (보건복지부 → 생산시설)

- 보건복지부는 청문조서 및 청문의견서 등을 토대로 처분 여부 등 확정
 - 당사자 등 제출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
-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처분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분대상자에게 결과 통지
 - 행정처분 결과는 유관기관*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 업무수행기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고수리기관, 장애인복지단체 법인설립 허가기관 등
 - ** '지정취소'에 한해 홈페이지 공고(개선명령·영업정지 행정처분은 홈페이지 공고안함)
 - 행정처분 된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업무수행기관을 통해 수의계약 대행 등에 있어 납품 배정 등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음

IV. 지도·감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제18조(지도·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기관에 출입하여 조사·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생산시설 점검

① 점검 유형

1) 정기점검

- 점검대상 : 정기 사후점검 계획 수립 시 대상 선정

* 생산시설 지정 연도, 생산 품목, 점검수행 인력, 점검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상 선정

<대상선정 예시>

- . 생산시설 지정 후 3년 이내 사후점검 등을 미실시한 시설
 - * 소재지 변경, 수의계약 대행, 품목추가 등을 포함하여 생산시설 지정 후 3년 내에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시설
- . 부정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시설

- 점검기간 : 연중, 현장점검의 경우 사전예고 없이 불시점검
- 점검내용 : 생산시설 지정요건 전반

<생산시설 지정기준 주요내용>

- . 장애인근로자 수(10명 이상)
- .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70%이상)
- . 중증장애인 고용비율(60%이상, 단, 특례적용 품목의 경우 30%이상)
- . 장애인근로자 생산 공정 참여율(50% 이상)
- .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여부

2) 수시점검

○ 점검대상

- 기관 또는 개인이 비위·위법행위, 지정요건 부적합 등에 대해 제보(민원제기)한 생산시설
 - *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하나 익명인 경우라도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경우 점검 대상에 포함(단, 제보된 내용의 개연성이 현저히 낮거나 정황 등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경우 점검 제외)
- 유관 행정기관 등이 비위·불법 정황을 인지하고 점검을 요청한 생산시설
- 생산시설 지정 또는 운영 등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 관련 생산시설
- 보건복지부가 지정요건 위반 의심 등 수시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생산시설

○ 점검기간 : 연중, 불시점검 원칙

- 점검내용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16호)」 준수여부 전반 및 비위·불법행위 관련 사실 여부 등

○ 점검 유의사항

- 제보자 또는 민원인 정보(이름, 연락처 등)를 가능한 한 확인하되, 익명제보인 경우라도 사실정보가 구체적인 경우 점검 실시
- 제보자 또는 민원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

- 대외기관 조사의뢰 및 조달청 등 관련부처의 행정처분에 따른 사후 점검 시,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중점으로 점검

② 점검 절차 및 방법

1) 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계획 수립
 - 점검 목적·근거·종류·대상·범위, 점검 기간 및 점검 방법 등 포함
 - * 업무수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은 연도별 정기 사후점검 운영 계획을 매년 2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점검 관련 제반 사항 지원
 - 점검계획 수립 시 조사대상 생산시설에 제시하기 위한 '현장조사서' 준비
 - * 현장조사서에는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자, 관계법령 등 명시
- ☞ [서식 16(81p)] 현장조사서

2) 점검반 구성

- 점검반 구성 : 2명이상 구성 원칙
 - 점검의 종류, 생산시설의 특성, 점검 사유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업무수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점검 인력을 지원받아 점검반 구성
 - * 필요시 외부 전문가 등 동행 가능
- 점검 지원기관 : 업무수행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 점검반 구성 시 유의사항
 - 점검 인력이 점검 대상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점검 대상과 친인척, 학연, 지연 등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반 구성 시 제외(제척·기피)
 - 기타 객관적·공정한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점검반으로 편성 요청 가능

3) 점검의 통지 및 착수

- 현장점검의 경우 사전예고(통지) 없이 현장 방문
- 점검자(반) 유의사항
 - 생산시설 대표자 등에게 신분증, 현장조사서(보건복지부장관 직인날인), 사후점검 안내서 및 사후점검 추가 서류요청서 등을 제시하고 점검 협조사항을 설명
 - 점검은 생산시설 내에서 실시하되, 불가피한 경우 생산시설 외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 또는 온라인 자료 제출 요구 가능
 - 제보, 민원에 따른 점검의 경우 제보자(민원인)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보호) :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4) 점검 실시

- 서류 및 현장 조사
 - 장애인근로자 고용, 생산품 직접생산 및 정당한 생산공장, 생산설비 보유 여부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기준 전반에 대하여 점검
 - 단, 특정 위반사항에 대한 제보에 따른 점검의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만 점검 가능(단, 필요시 점검사항 확대가능. 이 경우이라도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점검)
 - 현장 점검 시 사진촬영, 녹음, 동영상 촬영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각종자료 및 사실관계 확인
 -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16호)」에 따라 심사기준 준수여부 확인

- 생산시설의 장애인근로자·설비·공장 등의 현황,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 등 지정 기준 준수여부 점검을 위한 서류 등의 확인
-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 납품 현황, 원부자재 구입 현황 및 매입·매출장, 생산설비 현황 등 생산품 직접 생산 관련 사실관계 확인
- 점검 시 생산시설 대표 등이 부재하여 서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점검 시 제출 요청한 자료 검토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 ☞ [서식 19(84p)] 추가자료 제출요구서
- 생산품 생산 관련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
- 점검 중 거짓 또는 사실관계에 의심이 가는 사항에 대하여 생산시설 근로자 등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관계 추가 확인
- 점검 중 불법행위나 기준 위반이 발견 된 경우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생산시설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대표 혹은 관계자의 확인서 요청

< 확인된 사실에 대한 설명 및 확인서 제출 요구 방법 >

※ 확인된 사실에 대한 설명 및 확인서 제출 요구

- 점검자는 현장·서류 등에서 확인한 위반·부당의심 내용 등을 생산시설 대표 등에게 설명
- 점검자는 확인내용을 종합하여 생산시설 대표 등으로부터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을 받음
 - * 확인서에는 점검대상, 지정기준 위반 행위 등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 생산시설 대표 등이 확인서의 작성·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확인서에 날인거부 사실을 기재하고, 확인한 내용을 점검자가 기재한 후 점검자 전원이 연명하여 서명

☞ [서식 17(82p)] 사실확인서 / ☞ [서식 18(83p)] 생산설비 보유확인서

○ 사후점검 거부·방해 시

- 생산시설 대표 등에게 자료 제출 거부 또는 점검 거부·방해한 경우에 대한 제재사항(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안내하고 점검에 응하도록 유도
- 최종적으로 점검을 거부할 경우 점검자 전원의 확인서 작성 및 증빙 자료 첨부

* (복지부) 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 검토

< 점검 거부·방해·기피 행위(예시) >

- . 대표자가 명시적으로 사후점검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 . 조사인력이 요청한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지연 제출하는 경우
- . 정당한 이유 없이 생산시설 출입을 막거나, 조사인력의 조사 및 질문에 답하지 아니한 경우
- .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 또는 협박 등의 위력을 가하여 조사인력을 압박하는 경우
- . 기타 사후 점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경우

5) 사업장 폐쇄, 관련 인력부재 등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 현장조사 당일 시설 관계자와 연락 가능 여부에 따라 조치

- 유선연락은 아래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생산시설 대표번호, 담당자번호 및 운영법인 대표번호

① 연락이 가능한 경우: 시설 관계자 배석하여 점검 진행

* 당일 배석 또는 점검이 어려운 경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제출기한 적시, 기한 내 미제출 시 행정처분)

②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 생산시설 출입구 등에 '현장조사서' 부착하여 사진촬영 후, 현장심사 당일 생산시설 대표 등에게 사진 첨부하여 문자메세지 전송

☞ [서식 16(81p)] 현장조사서

- 현장조사일로부터 7일 이내 생산시설 대표 등과 유선연락을 시도하여, '사후점검 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사상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 현장조사일로부터 7일 이내 유선연락 불가할 경우, 등기우편과 전자우편 각각을 통해 ‘사후점검 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자료제출 요구 시, 등기우편과 전자우편으로 관련 내용을 각각 송부할 것)
 - * 등기우편 발송 시 법인등기부등본 상 주소, 법인대표 주소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상 주소로 각각 발송
 - * 전자우편 발송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상 수집된 생산시설 대표 이메일 및 시설담당자 이메일로 각각 발송
-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 발송 이후 10일 이내 답변이 없거나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 해당시설에 대한 사후점검 진행 종료 및 복지부 보고
 - * 복지부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절차 진행

6) 점검 진행상황 및 결과 보고

○ 점검 진행상황 보고

- 점검반은 주요 조치사항, 특이사항 등이 있는 경우 점검 당일 보건복지부에 유선보고
- 점검을 종료하기에 앞서 생산시설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내용 재확인

○ 점검결과 보고

- 업무수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점검 종료시 보건복지부에 결과보고
 - * 생산시설명, 지정기준 위반 현황, 점검 사유, 행정처분 현황 등을 포함
- 확인된 지정기준 위반사항, 타 법령 미준수 사항, 기타 건의사항 등을 포함 보고
- 업무수행기관 연 또는 반기별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에 정기 보고
 - * 생산시설명, 심사이력, 지정기준 위반 현황, 점검 사유, 행정처분 현황 등을 포함

7) 점검결과 통보

- 점검대상 생산시설에 통지(공문)
 - 보건복지부는 점검결과를 확정하여 해당 생산시설에 그 결과 통보
 - * 생산시설명, 관련법령, 지정기준 등 위반사항 등 기재
- ☞ [서식 20(85p)]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후점검 결과통보서

2 생산시설 현황 점검

① 장애인근로자 고용현황 현행화

- 생산시설은 소속 근로자 고용현황을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상시 입력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
 - 보건복지부는 업무수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정기적으로 현행화 입력 실태 점검(반기 또는 분기)
- 자료 미입력 및 현행화 자료에 따른 지정기준 미달 시설 관리
 -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화 자료를 입력하지 않은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기피로 보아 행정처분할 수 있음
 - 입력된 정보를 기준으로 지정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된 생산시설에 대해 미달 사유 확인(한국장애인개발원)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세부기준’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보건복지부)

② 지정 생산품목 및 직접생산 관리

- 생산시설은 지정품목의 직접생산 확인과 관련한 각종 실적 및 현황 통계 자료를 우선구매관리시스템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
- ☞ [서식 28(106p)]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직접생산 보고서(월별)

- 생산시설의 꿈드래 쇼핑몰 의무 가입 및 지정생산품목 쇼핑몰 등록
 - 지정품목 관련 정보(품명, 가격, 사진 등)를 등록하고 수시 현행화
 - * 공공기관이 꿈드래 쇼핑몰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시 우선구매실적이 자동 등록됨(입력오류 감소)

3 벌칙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2.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제23조(과태료) ① 제1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1 형사고발

- 형사고발 대상 : 「특별법」 제22조 해당 생산시설 관계자 등
 - 「특별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 「특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 벌칙내용 : 사법기관 수사결과 「특별법」 제22조 각 호에 해당자로 확인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고발주체 : 보건복지부

○ 고발기준

-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하여 행정처분만으로는 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행정처분 절차와 고발조치 병행 가능
- 명의대여의 경우 대여한 생산시설 명의를 이용한 일반인(일반기업)도 고발 조치
- 관련 증거나 정황 등에 따라 생산시설 명의 대여 등이 의심되어 사법기관의 수사 시 위반행위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의대여 의심사례(예시)>

- . 유사·동종업체 임직원이 생산시설 이름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생산시설이 그렇게 하도록 묵인한 행위 포함)
- . 타인(일반기업 등)이 생산시설 이름으로 물품·서비스를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방식으로 계약·납품하는 경우(생산시설이 그렇게 하도록 묵인하는 행위 포함)
- . 조달청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18.6.15,개정안 기준) 제2조 제10호 '명의대여' 및 제11호 '명의차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10. “명의대여”란 단체가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단체 이외의 자가 단체 명의를 사용하고 직접생산시설 등을 투자하고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계약물품의 생산·납품 등 일체의 계약행위를 이행하게 하며 그 대가로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명의차용자”란 단체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단체 명의로 직접생산시설 등 모든 투자를 하거나, 본인의 생산시설을 단체의 생산시설로 형식상 등록하여 원부자재의 구매 및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등의 계약행위를 이행하고 단체에게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

2 과태료

- 처분대상 : 지도·감독을 위하여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한 생산시설
 - 사후점검 거부·방해 등에 따라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 생산시설 대표 등에게 그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에 서명을 받거나, 날인거부 시 거부 내용 등을 점검자가 기재한 후 점검자 전원이 서명
- 처분방법 및 절차 : 관련법에 따라 산출된 과태료를 생산시설에 부과
 - (산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관련법에 따라 1/2범위 내 가·감경 적용 가능)

<과태료 산출기준 및 가·감경사유(「특별법 시행령」 별표4)>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위반
법 제1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우선구매특별법 제23조제1항	100	200	300

<과태료 감경사유>

- .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유공자 및 미성년자 등)
- .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사전통지)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하면서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지정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 * 통지내용 :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의견 제출 기한, 과태료 경감 가능 사항
- (부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여부 및 부과금액을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

V.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사이버교육

- (제작목적) 공공기관 우선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시교육 기회제공 및 접근성 확대를 통한 우선구매 제도 대외 인지도 향상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안내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우선구매제도 소개
 -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소개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방법 안내
 - 중증장애인생산품 소개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방법 안내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리 시스템 사용 안내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리 시스템 개요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리 시스템 설치 및 접속 안내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제출 방법 안내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승인 및 반려 방법 안내
 - 중증장애인생산품 꿈드래 쇼핑몰 사용 안내
 - 꿈드래 쇼핑몰 사용 방법 안내

- 운영시기 : 2019. 2월~

- 사용매뉴얼 : <붙임2(55p)> 참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정도 (개정 2019.6.4., 시행 2019.7.1.)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 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

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래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정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 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 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628호, 2019. 6.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 정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또는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제4급부터 제6급까지의 장애인 또는 장애등급이 제4급부터 제6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단서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②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회원가입

1) 회원가입

-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사이버교육센터 접속

접속 주소: <https://goods.kohi.or.kr/>



Click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트가 아닌 위 주소로 별도 회원 가입 필요

- * 신청 및 교육일시: 연중 상시 신청, 신청 후 21일 내 학습
- * 교육 참가 공무원은 교육 이수시간 2시간 인정(수료증 제공)

1) 회원가입



1) 회원가입



1) 회원가입

이용약관 동의(필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교육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개발원과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공지 및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내용 중 '이용약관'란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공표된 것입니다.
2. 개발원은 시장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 또는 일부 수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공표가 발생합니다.

제3조(약관의 준칙)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를 따릅니다.

4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필수)

가. 수집, 이용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 2항에 의해 개인정보처리방침, 글쓰기 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정보를 차감하여 회원관리 및 교육서비스를 위해 아래와 같은 항목을 처리합니다.

나. 항목

1. 회원관리 및 회원관리 및 행사관리 정보
- 로그인
· 수집항목: 본인명
· 보유항목: 내/외국인, 성명/성명 앞 부분, 연령, 성년일,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교육기관, 직무분야, 자격구분, 해당업무종류기간
· 선택항목: 전화번호, 실 주소, 부서명, 상세직무
· 보유기간: 수집목적에 의한 보유
·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1) 회원가입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2)항, 개인정보처리방침 제4항, 제4항(별첨), 제4항(별첨), 제4항(별첨)에 따라, 본 서비스의 개발, 운영, 유지보수,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동의하지 않을 시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며, 동의하는 회원의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되며, 동의하지 않을 시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며, 동의하는 회원의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나. 수집항목

- 개인정보제공 대상: 공무원
- 제공받는 자: 시/도/교육청을 이용하는 교육정보 운영기관 및 부처, 지자체
- 제공받는 목적: 서비스 운영
- 개인정보항목: 성명, 성년일, 교육기관, 부서명, 직명, 직급, 교육지역, 교육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3조(2)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한

다. 동의 거부할 권리 및 불이익: 개발원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할 권리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는 모든 교육정보서비스에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며, 동의하는 회원의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6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선택)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취소

확인

1) 회원가입

The screenshot shows a registration interface with four main steps: 1. Check (완료됨), 2. Registration (가입완료), 3.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정보동의), and 4. Registration (가입완료). A red circle with the number '7' highlights the selection step. Below this, there are two options: '휴대폰인증' (Mobile Phone Authentication) and '아이핀인증' (iPin Authentication), each with a red button labeled '휴대폰인증' and '아이핀인증' respectively.

(선택) 휴대폰인증 및 아이핀인증

1) 회원가입

The screenshot shows a detailed registration form. On the left is a sidebar menu with options like '구분', '직업', '사용자계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번호', '주민번호후반',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SMS 수신여부', and '이메일 수신여부'. The main form area contains fields for '이름' (Name), '주민번호' (Resident Number), '주민번호후반' (Resident Number Suffix), '성별' (Gender), '생년월일' (Date of Birth), '전화번호' (Phone Number), '휴대전화' (Mobile Phone Number), '이메일' (Email), and 'SMS 수신여부' (SMS Consent). A red circle with the number '8' highlights the bottom section of the form, which includes the text '회원가입 정보 작성' and two buttons: '이전' (Previous) and '다음' (Next).

2. 교육 수강신청

2) 교육 수강신청

The screenshot shows the KOHH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the logo 'KOHH 품드레' and several menu items: '교육소개', '수강신청', '마이페이지', and '학습지원센터'. A red box highlights the '수강신청' button, with a red circle containing the number '1' next to it.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is a main content area. On the left, there is a section titled 'KOHH 교육플랫폼 전체메뉴서비스' with an image of a heart. To the right of this section, there is a grid of buttons. A red box highlights the '과정검색 및 신청' button, with a red circle containing the number '2' next to it. Below the main content area, there are sections for '공지사항' (Notice), '자주하는 질문' (Frequently Asked Questions), and '학습지원센터 1670-9087'. At the bottom, there is a footer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logos for '한국장애인개발원' and 'KOHH'.

2) 교육 수강신청

교육소개 | **수강신청** | 마이페이지 | 학습지원센터

과정검색 및 신청

<014 | 수강신청 | 과정검색 및 신청

전체과정구분

전체(37) | **반경제로(8)** | 시위체지(27) | 참여공동심리 | 기본교육(1) | 학부공동(1) | 전체없음

장단의 학습 선택하시면 해당 분류에 대한 과정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총 37건 1 / 1페이지

번호	과정명	맞보기명칭	수강신청
27	공공 장애인생선용 우선구매제도 및 ...	맞보기명칭	수강신청
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편)...	맞보기명칭	수강신청

3 원하는 목록 선택

4 원하는 교육 수강신청

2) 교육 수강신청

(원하는 교육 수강신청 선택 시 기본사항 입력창)

▶ 접수신청유대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접수신청이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접수신청유대기관 : * * * * * | * * * * * | * * * * *

▶ 신청소속 : * * * * * | * * * * * | * * * * *

▶ 부서명 : * * * * * | * * * * * | * * * * *

▶ 상세직무 : * * * * * | * * * * * | * * * * *

▶ 접수신청처별코드 : * * * * * | * * * * * | * * * * *

▶ 접수신청처급코드 : * * * * * | * * * * * | * * * * *

▶ 접수신청처부서명 : * * * * * | * * * * * | * * * * *

▶ 접수신청처학구분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정보 입력 후 저장

2) 교육 수강신청

학습중인 과정(1건)
학습완료 과정(0건)

👤 사미리 👤 B/L

번호
과정명
학습하기
수강취소

👤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및 시스템안내(한국장애인
개발원)**
6
학습
취소

· 과정분류 : 기본교육 · 교육기간 : 19.04.23 - 19.05.13
 · 연도별 : 100% · 필수실용 증서여부 : N · 매머지기준 점도정보 : 0 / 34

2) 교육 수강신청

· 학습기간 : 2019.04.23 - 2019.05.13

7
학습하기

1 과정수료기준 및 과정개시만

과정수료기준	과정개시만
- 학습진도 100% 달성 - 종합점수 100점 이상 - 필수실용증-발생사태가 없습니다.	- ★[재수령는 질문] 17. HEXT... - ★[재수령는 질문] 16. 질문...

2 나의 학습현황

관람진도율(0%)

나의 진도율(0%)

3 나의 점수

평가항목	수료기준	가점치(%)	취득점수	관산점수	기준충족여부
학습진도	100점	100%	0점	0점	미충족
종합점수	100점		본면허득점수	0점	미충족
결과	미합격(성문에 참여하셔야 수료처리 됩니다.)				

2) 교육 수강신청

8 ※ 교육 수강 중 스크롤 이동 불가



3. 수강 신청한 교육 학습하기

3) 수강 신청한 교육 학습하기



3) 수강 신청한 교육 학습하기



3) 수강 신청한 교육 학습하기



· 학습기간 : 2019.04.23 - 2019.05.13

4
학습하기

1 과정수료기준 및 과정계서판

과정수료기준	과정계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진도 100% 달성 - 종합점수 100점 이상 - 필수강의목차 참석여부에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수권는 질문] 12, NEXT... - ★[착수권는 질문] 14, 질문...

2 나의 학습현황

관장진도율 (0%)	
나의 권도율 (0%)	

3 나의 점수

평가항목	수료기준	가중치(%)	취득점수	관산점수	기준충족여부
학습진도	100점	100%	0점	0점	미충족
종합점수	100점		문면취득점수	0점	미충족
점수		미달여(성문에 참여하셔야 수료처리 됩니다.)			

4. 교육 진도 현황

4) 교육 진도 현황

학습중인 과정(1건)
학습완료 과정(0건)

- 총 1건 1/1 페이지 🔍 서치 🔔 0/1

번호	과정명	학습하기	수강취소
1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및 시스템안내(한국장애인개발원) - 과정안내 : 기본교육 - 교육기간 : 19.04.23 - 19.05.13 - 연도료 : 0원 - 필수입력 부서정보 : IV - 매니저가중 권도정보 : 0/34	1 학습 취소	취소

4) 교육 진도 현황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및 시스템안내(한국장애인개발원)
교육진도

교육진도

- ▶ 교육진도
- ▶ 교육진도
- ▶ 교육진도
- ▶ 교육진도

교육진도	100%	100%	0%	0%	중요도
총합합수	000명		분반회차합수	0명	회차유지

※ 현재(실시간) 참여회차의 수로 집계됩니다.

1. 수료가능여부

분반회차유지	수료수합수	회차유지합수	2019.05.11.16:00
(중요도별)			

2. 교육회차별 보 (일) 학습가능 차사수 : [재전달]

차시	차시명	최초 학습일	최종 학습일	학습 연수	진도 (학습/전 학습해야 할 회)	학습 완료여부
1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2019.04.23	2019.04.23	1	1/1	Y
2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방법 안내	-	-	-	0/1	N
3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시	-	-	-	0/1	N
4차시	장애인 수출품 지원정책(공공기관 지원)	-	-	-	0/1	N

3. 교육하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자	조회수
교육진도가 없습니다.				

2

스크롤
아래로 이동

- 65 -

5. 교육 수료증 발급

5) 교육 수료증 발급

The screenshot shows the 'My Page' (마이페이지) section of the KOITA website. The page is divided into several columns. The 'My Page' column contains a 'Certificate of Completion' (수료증출력) button, which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 red circle labeled '1'. Below this, there is a table with columns for 'Title' (제목), 'Category' (과목명), 'Enrollment Period' (학수기간), 'Certificate Issuance' (수료일자), and 'Certificate Output' (수료증출력). The first row in the table is for 'Middle-aged and Elderly Lifelong Learning Priority Purchase and System Support (National Lifelong Learning Development Fund)' (중장년 평생인생상품 우선구매제도 및 시스템인체(한국장학연개발원)). The 'Certificate Output' column for this row has a 'Print' (출력) button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 red circle labeled '2'.

제목	과목명	학수기간	수료일자	수료증출력
중장년 평생인생상품 우선구매제도 및 시스템인체(한국장학연개발원)		2019.04.1		출력

5) 교육 수료증 발급



붙임3 : 각종 서식

[서식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신청 접수대장 (접수대장)

접수 번호	구분 (신규,기 지정)	운영법인	유형	시설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신청품목	비고

[서식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서류·현장) (관리대장)

접수 번호	구분 (신규,기 지정)	운영법인	유형	시설명	대표자	신청품목	심사의견 (적합·부적합)	부적합사유	보완/시정 요구사항	비고

[서식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리대장

접수 번호	구분 (신규,기지정)	운영법인	유형	시설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신청품목	지정여부	미지정 사유	비고

[서식 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교부대장

지정번호	지정일	구분 (신규,기지정)	운영법인	시설유형	시설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지정품목	비고 (지정서 발송일)

[서식 5]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후점검 관리대장

연번	점검일	운영법인	유형	시설명	대표자	주소	점검내용	점검결과	향후 조치계획	점검구분 (정기, 수시)	제보일 경우 작성 1) 제보자 2) 제보내용

[서식 6]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행정처분 관리대장

운영법인	유형	시설명	대표자	주소	법위반/부적합 사항	처분유형	사전통지일 (1)의견제출통지	사전통지일 (2)청문출석통지	청문일	처분통지일	비고

[서식 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재지정 신청서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9. 1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재지정)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시설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근로자 수	총	명 (장애인: 명, 중증장애인: 명)
생산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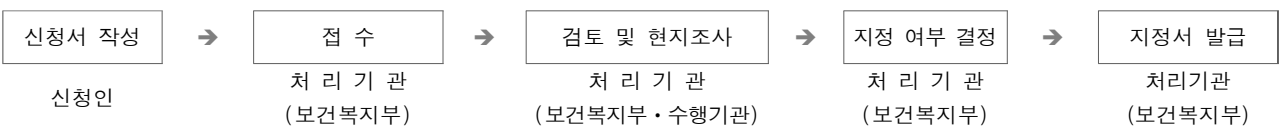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지정 []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설립허가증(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필증 2. 근로자 명부 1부 3. 근로자 임금대장 1부 4.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기간 만료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신청의 경우에는 제1호의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8] 생산시설 수익금의 법인 목적사업 사용계획서

기본현황	생산시설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지정번호		지정품목	
	운영법인명		법인대표	
	법인주소		연락처	
	법인의 주요목적사업 (정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연 매출 및 수익 예상액 (백만원)	㉑ 연 매출 예상액	㉒ 연 매출* 예상액 * 원부자재구입, 외주비, 인건비, 운영제경비 등 생산시설이 집행할 전체 금액	㉓ 연간 적립금(예비비) 예상액	㉔=[㉑-(㉒+㉓)] 연 수익금 예상액
수익금 사용계획	구분		수익금 사용 대상 사업계획	사용액 ²⁾ (백만원)
	주요 목적 사업 ¹⁾	합계	4개 사업	1,300
		소계	2개 사업	600
		목적사업(1) * 기재예시: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	* 기재예시 :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소개 리플렛 제작 발달장애인 생산품 박람회 운영	100 500
		소계	2개 사업	700
		목적사업(2) * 기재예시: 대국민 장애인 인식개선	* 기재예시 : 인식개선 포스터 공모사업 부상품 지원 * 기재예시 : 대국민 인식 조사사업	200 500
		소계		
	기타 ³⁾			

위와 같이 생산시설 수익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 생산시설 대표 ○○○ (인)
 확인자 : 운영법인 대표 ○○○ (인)

※ 위 자료는 향후 사후관리 및 재지정심사 시 점검기준으로 활용되니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바람

[서식 9]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공정도

생 산 공 정 도

○ 시 설 명 : _____

○ 신 청 품 목 : _____

연번	공정별 사진	공정명	공정설명	비중(%) ¹⁾	생산설비	장애인근로자 직무 ²⁾	배치된 장애인근로자 성명 및 장애정도 ³⁾	비 고
	사진							
↓								
	사진							
↓								
	사진							
↓								
	사진							
↓								
	사진							

1) 실제 신청시설 사진 촬영 후 사진첨부(반드시 첨부)

2) 전체공정이 100%일 때 각 단위 공정이 차지하는 비율

3) 해당공정에 배치할 장애인근로자 성명 및 중·경증 구분기재

※ 한사람이 여러 공정에 투입될 경우 해당 공정란에 모두 기재

[서식 10]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직접생산 장비 목록

직접생산 장비 목록

- 시설명 :
- 신청품목 :
- 작성일자 :

연번	설비명 ¹⁾	모델명	소유 또는 임차 여부	취득일 또는 임차일	매입 또는 임차금액 (단위:천원)	용도	생산능력/월 ²⁾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상 생산설비 명칭 기재 <small>(※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 되는 경우만 작성)</small>	비고

* 신청품목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보유(임차보유 포함) 장비를 전부 기재

* 작성 방법

- 1) 구입증빙,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회계기장 서류) 등을 참고하여 실제 생산시설에서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설비명칭 기재
- 2) 생산능력/월 : 장비 가동 시 월 평균 생산량 기재

본 시설은 상기의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법에 따른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서명), 확인자: (서명)

[서식 1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직접생산 원부자재 목록

원부자재 목록

○ 시설명 :

○ 신청품목 :

연번	품명	매입처	단위 ¹⁾	단가 (단위:천원)	용도	투입량 ²⁾ (원제품 1개 당)	비고

* 신청품목에 대한 원부자재 품목 전부를 기재

* 작성 방법

1) 단 위 : 원부자재별 단위

2) 투입량 : 신청 품목에 대한 완제품 1개 생산 시 투입되는 원부자재 소요량

[서식 1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유급근로자 명부

유급근로자 명부

○ 시설명:

○ 신청품목:

연번	성명	고용 연월일	장애여부 (Y or N)	장애 유형	장애 등급	중증여부 ¹⁾ (중증or경중)	월 근로시간 ²⁾	월 급여 ³⁾ (단위:천원)	직무	인건비 100% 지원 여부 ⁴⁾ (Y or N)

* 주석

1) 중증여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여부

2) 근로시간 : 월근무시간(일 근무시간 × 월 근무일자)

3) 급여 : 실제 지급(세금 공제 전) 월 급여(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4) 정부 정책에 따라 임금의 전부가 지원되는 근로자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V.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의

4. 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된 직원 해당여부

[서식 1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결과통보서(서류 현장)

구분	<input type="checkbox"/> 서류심사 <input type="checkbox"/> 현장심사		<input type="checkbox"/> 지정(신규, 품목추가), <input type="checkbox"/> 재지정	
시설(단체)명				
시설(단체) 소재지			대표자	
지정번호 (기지정시설)			최초지정일 (기지정시설)	
기지정품목 (기지정시설)			지정신청품목	
관련법령				
관련규정 세부내용				
심사결과				
보완/시정 요구사항				

※ 서류심사에서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신청품목의 지정심사는 종결

※ 위 사항은 금번 귀 시설에서 제출한 서류 상 확인된 사항(또는 현장점검 시 확인된 사항)입니다.

[서식 1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 1. 시설(단체)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생 산 품 목:
- 5. 유효 기 간:

위 시설(단체)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서식 15]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시설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재발급 사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 17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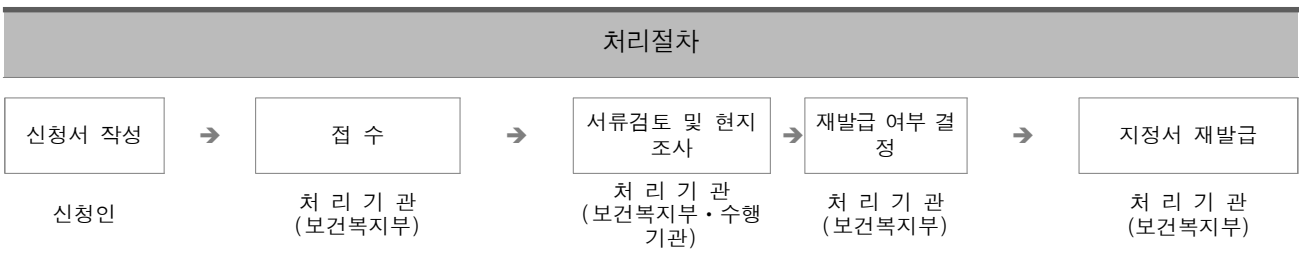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원본 1부(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원본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16] 현장조사서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현 장 조 사 서

조사대상	생산시설명 (대표자명)	지정번호
	지정품목	연락처
	주소	
조사 목적		
조사 기간		
조사 담당자		
조사의 범위 및 내용		
제출자료		
관계 법령		
유의사항	거부 시 제재사항(근거법령 및 조항)	
	그 밖의 안내사항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직급
연 락 처: 전화

성명
e-mail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17] 사실확인서

사 실 확 인 서

시설명	
점검일자	
점검자	
피점검자	

○

1.

-

2.

-

3.

-

4.

-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 : 직위

성명

(서명)

[서식 18] 생산설비 보유 확인서

생산설비 보유 확인서

연번	생산설비명	모델명	일련번호	구입년도	비 고

 동 생산시설은 상기의 생산설비를 자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중증장애인 생산품생산시설의 지정취소), 동 법 제22조(벌칙) 및 제23조(과태료)에 따른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시설명 :

대 표 자 :

(서명)

[서식 19] 추가자료 제출 요구서

추가 자료 제출 요구서

시 설 명		구 분	<input type="checkbox"/> 지정심사 <input type="checkbox"/> 사후점검 <input type="checkbox"/> 재지정심사
요구일자		제 출 처	
제출요청 자료	연번	제출자료	제출기한
	1		
	2		
	3		
	4		
	5		
	6		
	7		
<p>위 요청 자료를 해당 제출처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점검자 소속·직위 성명 (서명)</p>			
<p>위 자료의 추가 제출에 동의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심사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생산시설명 직위 성명 (서명)</p> <p>※ (참고) 생산시설 자료 제출 담당자 및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상기인과 동일 <input type="checkbox"/> 상기인과 동일하지 않음 (성명) (연락처)</p>			

[서식 20]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후점검 결과통보서

구분	<input type="checkbox"/> 정기점검 <input type="checkbox"/> 수시점검	
시설(단체)명		
운영법인명		시설유형
시설(단체) 소재지		대표자
지정번호		최초지정일
지정 품목		사후점검 일자
관련법령		
관련규정 세부내용		
심사결과		
보완/시정 요구사항		

[서식 2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시행일 :

수신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내용		지정번호	
2. 당사자	시설명	최초지정일	
	주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주소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제출기한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

[서식 22] 의견제출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서식 23]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청문실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시간)	장소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서식 24] 청문출석 포기 확인서

발신 :

수신 : 보건복지부장관(fax : 044-202-3962)

청문 출석 포기 확인서

1. 대표자 성명(처분대상자)
2. 생 년 월 일 :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청문참석 포기 사유 : (아래 공란에 구체적으로 기재)

20 년 월 일

처분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서식 25] 청문조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7.28>

청 문 조 서

제목				
청문주제자	소 속			
	성 명			
당사자등 (대표자, 대리인)	성명(명칭)	주소	출석 여부	불출석한 경우의 사유
참석한 행정청의 직원	직위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공개	공개 여부			
	이유			
당사자등의 진술내용	요지			
	제출된 증거			
증거조사	요지			
	증거			
기타				
년 월 일				
청문주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열람·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서식 26] 청문주재자 의견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14.7.28>

청문주재자 의견서

청문의 제목
처분의 내용·주요사실 또는 증거
종합의견(처분수준의 적정성, 경감필요성 등)
기 타
청문주재자 성명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서식 2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 자가 체크리스트

- ☞ 근거자료는 서류 및 현장심사 과정에서 요청 시 제시되어야 함(희망할 경우, 필수 제출자료가 아닌 경우라도 신청서류 제출 시 임의 첨부 제출 가능)
- ☞ 각종 인허가 관련 제출자료는 사본 제출도 무방하며, 사본 제작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복사(주민등록번호 노출 시 서류 반려)

□ 생산시설명 : _____ (지정신청 품목 : _____)

□ 지정심사 기준(‘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16호, ’16.6.29)

심사기준 및 항목	확인 사항	예 또는 아니오	비고
1. 신청자의 적격성	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근거서류 :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가(후단).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 근거서류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설치신고필증		
	나. 장애인복지단체 • 근거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익사업을 득하였거나, 운영법인 정관상 수익사업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근거서류 : 법인정관, 주무관청의 수익사업 승인 서류 등		

심사기준 및 항목		확인 사항	예 또는 아니오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시설의 수익금은 소속 운영법인의 장애인복지 등 단체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 근거서류 : 생산시설 수익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 사용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 신청 시설이 법인등기부등본 상 분사무소로 등재되어 있다. • 근거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2.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가. 장애인근로자 등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및 비장애인 근로자는 모두 생산시설의 대표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 생산시설의장 : 시설신고증상 시설장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 ※ 장애인훈련동의서, 훈련계약서 등은 인정불가 ※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생산시설이 속한 운영법인 대표 또는 제3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인정 불가(단, 생산시설의 대표와 운영법인의 대표가 동일한 경우는 예외) • 근거서류 : 근로계약서,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가-1) 근로계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시설 종사자로 배치된 직원이 있다. • 근거서류 : 인건비 보조금 신청 및 승인 공문, 임면보고 승인공문 등 		
	가-6) 겸직금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시설의 대표 및 소속근로자(장애인, 비장애인)는 타업체를 운영하거나, 근로 또는 겸직하고 있지 않다. • 근거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 심사 또는 점검 시 겸직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지정취소 됨

심사기준 및 항목		확인 사항					예 또는 아니오	비고																																		
	가-7) 소속 외 근로자 생산참여 금지	<p>- 생산시설 소속 근로자(장애, 비장애)로 계약된 자 이외의 사람(타업체 또는 운영법인 소속인 자, 특정 업체/기관 소속이 아닌 제3자 개인 등 포함)이 생산시설의 생산·영업 등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p> <p>• 근거서류 :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p>																																								
	<p>나. 장애인근로자 최소고용 인원 수</p> <p>나-1) 장애인근로자 고용인원</p>	<p>- 생산시설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장애인근로자가 10명 이상이다. ※ 두 개 이상의 품목을 지정받을 때는 품목당 5명 이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장애인근로자(명)</th>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4">세부품목(명)</th> </tr> <tr> <th>세부품목(1)</th> <th>세부품목(2)</th> <th>세부품목(3)</th> <th>미신청품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인원(명)</td> <td rowspan="2" style="color: red; text-align: center;">"인원수 기재"</td> <td>신청품목</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지정품목</td> <td>세부품목(1)</td> <td>세부품목(2)</td> <td>세부품목(3)</td> <td>미신청품목</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장애인근로자(명)	구분	세부품목(명)				세부품목(1)	세부품목(2)	세부품목(3)	미신청품목	인원(명)	"인원수 기재"	신청품목					기지정품목	세부품목(1)	세부품목(2)	세부품목(3)	미신청품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신청품목</td> <td style="width: 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지정품목</td> <td></td> </tr> </table>	신청품목		기지정품목		<p>※ 업체/업종이 완전히 다른 품목의 경우, 개별 시설로 볼 수 있음</p>
구분	장애인근로자(명)	구분	세부품목(명)																																							
			세부품목(1)	세부품목(2)	세부품목(3)	미신청품목																																				
인원(명)	"인원수 기재"	신청품목																																								
		기지정품목	세부품목(1)	세부품목(2)	세부품목(3)	미신청품목																																				
신청품목																																										
기지정품목																																										
	다. 장애인근로자 고용 비율(70% 이상) 및 중증비율(60%이상)	<p>- 장애인근로자의 비율이 전체 계약 근로자의 70% 이상이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text{a}=\text{b}+\text{c}$ 전체 근로자</th> <th>장애인^b근로자</th> <th>비장애인^c근로자</th> <th>$\frac{\text{b}}{\text{a}}\times 100$ 장애인 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인원(명) 또는 비율(%)</td> <td></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구분	$\text{a}=\text{b}+\text{c}$ 전체 근로자	장애인 ^b 근로자	비장애인 ^c 근로자	$\frac{\text{b}}{\text{a}}\times 100$ 장애인 비율	인원(명) 또는 비율(%)				%																										
구분	$\text{a}=\text{b}+\text{c}$ 전체 근로자	장애인 ^b 근로자	비장애인 ^c 근로자	$\frac{\text{b}}{\text{a}}\times 100$ 장애인 비율																																						
인원(명) 또는 비율(%)				%																																						

심사기준 및 항목	확인 사항	예 또는 아니오	비고										
	<p>- 장애인근로자 중 60% 이상이 중증장애인이다.</p> <table border="1" data-bbox="685 357 1675 470"> <thead> <tr> <th data-bbox="685 357 864 411">구분</th> <th data-bbox="864 357 1066 411">$(a)=(b)+c$ 전체 장애인근로자</th> <th data-bbox="1066 357 1267 411">중증장애인^(b)</th> <th data-bbox="1267 357 1469 411">경증장애인^(c)</th> <th data-bbox="1469 357 1675 411">$(b/a) \times 100$ 중증 비율</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685 411 864 470">인원(명) 또는 비율(%)</td> <td data-bbox="864 411 1066 470"></td> <td data-bbox="1066 411 1267 470"></td> <td data-bbox="1267 411 1469 470"></td> <td data-bbox="1469 411 1675 470">%</td> </tr> </tbody> </table>	구분	$(a)=(b)+c$ 전체 장애인근로자	중증장애인 ^(b)	경증장애인 ^(c)	$(b/a) \times 100$ 중증 비율	인원(명) 또는 비율(%)				%		
구분	$(a)=(b)+c$ 전체 장애인근로자	중증장애인 ^(b)	경증장애인 ^(c)	$(b/a) \times 100$ 중증 비율									
인원(명) 또는 비율(%)				%									
<p>라. 사회보험 가입 등 라-1) 사회보험 가입</p>	<p>- 장애인 및 비장애인 근로자는 모두 생산시설 명의의 4대사회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서류 : 생산시설 명의의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 명부, 근로자 명부 등 												
<p>라-2) 급여지급</p>	<p>- 장애인 및 비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서류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관련 지출기안 서류, 생산시설 명의 통장 (또는 급여지급 이체내역), 근로자명부 등 <p>-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서류 :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서 												

심사기준 및 항목		확인 사항	예 또는 아니오	비고										
3. 장애인 근로자 생산공정 참여율	가. 생산공정 참여율 (50% 이상)	<p>- 지정 신청한 품목의 직접 생산을 위해 최근 1개월 동안 장애인근로자가 생산공정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이 전체 근로자 공정투입 시간의 50% 이상을 차지한다.</p> <p>※ 지정기준 가-1) 항목에 의거 지정신청 품목과 무관한 임가공 또는 미지정 품목 생산공정에 투입된 근로시간 등은 제외하고 산정함</p> <table border="1" data-bbox="689 515 1675 651"> <thead> <tr> <th>구분</th> <th>①=②+③ 총 참여시간</th> <th>④ 장애인 참여시간</th> <th>⑤ 비장애인 참여시간</th> <th>④/①×100 장애인참여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인원(시간) 또는 비율(%)</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공정 참여시간 계산 : 근로계약시간 - 지정신청 품목 외 생산공정 근로시간(임가공 근로기간, 미지정 품목 생산공정 근로시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서류 : 공정표, 생산·작업일지 등 	구분	①=②+③ 총 참여시간	④ 장애인 참여시간	⑤ 비장애인 참여시간	④/①×100 장애인참여비율	인원(시간) 또는 비율(%)				%		
구분	①=②+③ 총 참여시간	④ 장애인 참여시간	⑤ 비장애인 참여시간	④/①×100 장애인참여비율										
인원(시간) 또는 비율(%)				%										
4. 중증장애인생산물 직접생산 여부	가. 직접생산 정의 가-1)직접생산 정의	<p>- 장애인 및 비장애인 근로자가 해당 생산시설에서 지정신청 품목의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서류 : 장애인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근로자 업무분장표, 생산공정표 등 												
	나. 생산공장 나-1) 공장등록	<p>- 생산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서류 : (공장등록증 보유한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공장등록증, (공장등록증 보유하지 않은 경우)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사업자등록증명 												

심사기준 및 항목		확인 사항	예 또는 아니오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일 경우, 공장등록증에 직접생산 확인기준 상의 신청품목에 해당하는 업종 및 분류번호가 기재되어있다. • 근거서류 : 공장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등록증상 면적은 신청품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기준' 이상의 면적이다. • 근거서류 : 공장등록증 																									
	나-3)기재사항 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공장 실소재지, 사업장명, 대표자 등이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 '영업신고증' 등 관련서류 간에 일치되게 기재되어 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25%;">명칭</th> <th style="width: 25%;">주소</th> <th style="width: 25%;">대표자</th> </tr> </thead> <tbody> <tr> <td>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td> <td></td> <td></td> <td></td> </tr> <tr> <td>사업자등록증(1)</td> <td></td> <td></td> <td></td> </tr> <tr> <td>사업자등록증(2)</td> <td></td> <td></td> <td></td> </tr> <tr> <td>공장등록증명서</td> <td></td> <td></td> <td></td> </tr> <tr> <td>법인등기부등본</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명칭	주소	대표자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업자등록증(1)				사업자등록증(2)				공장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구분	명칭	주소	대표자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업자등록증(1)																											
사업자등록증(2)																											
공장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심사기준 및 항목	확인 사항						예 또는 아니오	비고																								
	<table border="1" data-bbox="685 312 1659 504"> <thead> <tr> <th data-bbox="685 312 837 368">생산품목명</th> <th data-bbox="837 312 1001 368">인허가/인증 명칭</th> <th data-bbox="1001 312 1167 368">인허가/인증 시설 명칭</th> <th data-bbox="1167 312 1330 368">주소</th> <th data-bbox="1330 312 1494 368">대표자</th> <th data-bbox="1494 312 1659 368">인허가/인증 기관</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ul data-bbox="685 587 1688 687"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서류 :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필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영업신고증(또는 등록증), 인증확인서 등 (2개 이상 장소에서 생산품 생산 시 각 소재지별 근거자료 추가 필요) 						생산품목명	인허가/인증 명칭	인허가/인증 시설 명칭	주소	대표자	인허가/인증 기관																				
생산품목명	인허가/인증 명칭	인허가/인증 시설 명칭	주소	대표자	인허가/인증 기관																											
나-4)생산공장 임차	<p data-bbox="685 751 1688 847">- (생산시설/공장이 임차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생산시설 명의로 되어 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차료를 지원한 경우는 생산시설이 아닌 생산시설 소속 운영법인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도 인정</p> <ul data-bbox="685 927 1688 991"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서류 : 임대차계약서, 위수탁계약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차료 지원 관련 문서 등 																															
	<p data-bbox="685 1110 1666 1142">- (생산시설이 임차건물인 경우) 생산공장의 임차료를 생산시설이 납부 완료 하였다.</p> <ul data-bbox="685 1270 1357 1302"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서류 : 임차료 납부내역서(통장 또는 이체내역) 																															

심사기준 및 항목		확인 사항	예 또는 아니오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보증금을 생산시설 또는 소속 운영법인이 납부 완료 하였다. • 근거서류 : 임차보증금관련 세금계산서 및 생산시설명의(또는 법인명의) 통장 (또는 이체내역) 또는 임차보증금이 등재된 생산시설/법인 재무상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시설/공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의 소유주가 임대계약서 상 임대인과 일치한다. • 근거서류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인이 생산시설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인이 지정신청 품목과 유사·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 • 근거서류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임대인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로 등록 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시설/공장 소재지에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장이 중복 등록되어 있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시설/공장을 다른 사업장(업체, 매장, 사무실, 공장 등)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심사기준 및 항목		확인 사항	예 또는 아니오	비고									
		- 생산시설/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운영비는 물론 설비비 등도 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인이 부담하고 있지 않다.											
		- 생산시설/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정신청 시설과 무관한 제3자가 부담하고 있지 않다.											
		- (생산시설/공장을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 임차한 생산시설/공장의 소유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생산시설 소속 운영법인이다. ※ 그 외의 경우는 불인정 • 근거서류 : 생산공장의 소유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생산시설의 운영법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나-5)생산공장 기증	- (생산시설/공장을 기증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증사실을 공증받고 건물등기부에 생산시설의 소유로 등재하였다. • 근거서류 : 기증서, 기증 관련 공증서, 건물등기부등본, 기증된 자산이 등재된 생산시설 재무제표 등											
나-6)동일소재지 복수 공장	- (동일 지번에 다른 생산공장 건물이 있는 경우) 각 공장이 별도의 건물로 분리되어 있으며 각각의 출입구를 두고 있다.												
나-7)사업자등록증 정보	- 사업자등록증명상의 업태 및 업종란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해당 지정 신청품목이 명시되어 있다.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 rowspan="2">지정품목 1</td> <td>사업자등록번호</td> <td></td> </tr> <tr> <td>업태(종목)</td> <td></td> </tr> <tr> <td rowspan="2">지정품목 2</td> <td>사업자등록번호</td> <td></td> </tr> <tr> <td>업태(종목)</td> <td></td> </tr> </table> • 근거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지정품목 1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지정품목 2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지정품목 1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지정품목 2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심사기준 및 항목		확인 사항	예 또는 아니오	비고
	다. 생산·검사설비 구비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신청 품목에 해당하는 필수생산·검사 설비를 생산시설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 단, 해당 신청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중소기업자 간 직접생산 확인기준' 상 해당품목의 필수 설비 • 근거서류 : 생산·검사 설비 목록, 설비구입 지출결의서, 설비 구입 계약서, 세금계산서, 생산시설명의 통장(또는 이체내역),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명세서 등 		
	다-1), 다-2) 생산설비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심사 신청 시 제출한 '생산·검사 설비목록'에 등재된 설비는 현장에 설치된 설비와 일치한다. • 근거서류 : 생산·검사 설비 목록, 설비구입 지출결의서, 생산·검사 설비 구입 계약서, 세금계산서, 생산시설명의 통장(또는 이체내역) 등 		
	다-3) 생산·검사설비 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를 유상 임차한 경우) 생산·검사 설비의 임대차계약이 생산시설 명의로 체결하였다. • 근거서류 : 생산·검사 설비 임대차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생산시설이 납부하였다 • 근거서류 : 임차료 납부내역(통장, 이체내역서) 		

심사기준 및 항목		확인 사항	예 또는 아니오	비고
		- (설비를 무상 임차한 경우) 생산·검사 설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이다. ※ 그 외의 경우는 무상임차 불인정		
		• 근거서류 : 생산·검사 설비의 소유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생산·검사 설비의 임대인이 생산시설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지 않다.		
		- 임차한 생산·검사 설비를 타업체(임대인 포함)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 생산·검사 설비 임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인 또는 생산시설과 무관한 제3자가 부담하고 있지 않다.		
다-4) 생산·검사설비 기증	- (설비를 기증받은 경우) 기증사실을 공증 받고 생산시설 자산대장 및 재무제표에 등재하였다.			
	• 근거서류 : 기증 관련 공증서, 설비목록이 등재된 재무제표, 자산대장 등			
다-5) 생산·검사설비 가동	- 생산·검사 설비의 가동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생산시설이 부담하고 있다.			
	• 근거서류 : 제경비 관련 납부 내역서 및 증빙서			

심사기준 및 항목		확인 사항	예 또는 아니오	비고
	라. 전문기술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신청 품목 생산과 관련하여 해당 설비를 가동할 수 있는 전문기술이 1명 이상 재직하고 있다. • 근거서류 : 채용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사회보험가입자명부, 급여이체내역서, 이력서, 신청품목 관련 자격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전문기술인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정한 생산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 • 근거서류 : 신청품목 관련 자격증 등 		
	마. 생산 공정별 직접 생산 여부 확인 마-1)직접생산 공정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인력, 생산설비, 원부자재 등을 활용하여 지정신청 품목을 공정별로 직접 생산하고 있다. • 근거서류 : 공정표 등 		
	마-2), 마-3) 직접생산 서류 및 업무처리 명의 등 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생산과 관련한 일체의 관련 서류 및 업무처리가 생산시설 명의와 일치하고, 관련 실적 등을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근거서류 : 원부자재수불관리대장, 매입장, 지출기안, 대금지급 통장내역 신청 품목에 해당하는 인·허가/면허/등록/신고 등 표시 관련 서류, 재고관리, 판매관리, 매출장, 생산·작업일지, 수입기안, 수입대금 통장 내역 등 		
마-4)생산시설 회계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시설 업무처리 관련 서류 및 회계가 소속 운영법인과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 • 근거서류 : 업무 및 회계처리 관련 서류 일체 			

심사기준 및 항목		확인 사항	예 또는 아니오	비고
	바. 제조물품의 완제 여부 등 바-1) 완제여부	- 지정 신청 품목은 단순 조립공정에 의존해 완성되는 물품이 아니다. ● 근거서류 : 공정표 등		
	바-2)인허가 표시 일치	- 지정신청 품목의 제조·판매 등을 위해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인허가 및 인증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인증 등) 표시가 생산시설 명의로 되어 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법인 명의로 제한하는 경우는 예외 인정 ● 근거서류 : 관련 인허가 및 인증획득 증명서류		
	바-6) 생산품 표시	- 생산물품 또는 포장지에 생산시설 명의로 제조·판매원이 표시되어 있다.		

[서식 28]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직접생산 보고서(월별)

☞ 본 서식은 별도의 엑셀 파일 형태로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게시(다운로드 사용)

[28-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근로자 고용현황

[28-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직접생산 매입매출현황

[28-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직접생산 공정계획